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 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.

- 1)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- 2)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- 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6조
 - 1)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각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위 규정에 따라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

2. 주요내용

가. 평가 대상 : 금천일자리주식회사

나. 평가 내용

- 1) 금천일자리주식회사(2021년도 실적) 기관 경영평가
- 2) 금천일자리주식회사(2021년도 실적) 대표이사 성과평가
- 대표이사(임병호) : 2021. 01. 01. ~ 2021. 12. 31.

다. 평가 방법 : 외부 전문기관 용역(수의계약)

1) 용역기간 : 2022. 3. 8. ~ 7. 7.(4개월)

2) 소요예산 : 12,770천원(구비)

3. 그간 추진 일정

2022. 2월 ~ 3월	2022. 4월	2022. 5월	2022. 6월
①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용역 계약	② 평가지표 확정③ 경영평가 설명회④ 경영실적 및 이행 실적 보고서 제출	⑤ 서면평가 및 현장 평가실시 (경영평가단 운영)⑥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	 ③ 평가보고서 및 종합분석 작성 (이의신청 검토) ⑧ 출자·출연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 확정 ⑨ 결과통보 및 활용

4. 평가결과

가. 경영평가(기관평가) 결과 : A등급

○ 평가 점수 : <u>84.6점</u>

분야	영 역	지표내용	배점	득점
지속가능경영	리더십, 경영시스템	- 전략경영 - 재무관리의 적정성	25	20.5
경영성과	사업관리, 수익성 및 생산성 등	당기순이익 등 목표달성도고객만족도 조사	45	41.1
사회적가치	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	- 소통 및 참여, 윤리경영 등	30	23
총 계				84.6

○ 평가등급 : A등급

등 급	S	Α	В	С	F
평 점	90점 이상	90점 미만 ~ 80점 이상	80점 미만 ~ 70점 이상	70점 미만 ~ 60점 이상	60점 미만

나. 성과평가(평가) 결과 : A등급

○ 평가점수 : <u>85.3점</u>

평가구분	영 역	지표내용	배점	득점
	책임경영	- 리더십, 윤리경영	10	8.5
자체지 <i>표</i>	고객만족도 증진	- 고객만족도 및 민원발생 최소화	10	8
(40점)	경영수지 개선	- 영업매출 및 예산절감 목표달성	10	10
	사업관리	- 주요시업 관리 및 신규시업 발굴	10	8
경영평가 점수 환산 (60점)	기관경영평가 점수 환산		60	50.8
총 계			100	85.3

○ 평가등급 : <u>A등급</u>

등 급	S	Α	В	С	F
평 점	90점 이상	90점 미만 ~ 85점 이상	85점 미만 ~ 80점 이상	80점 미만 ~ 70점 이상	70점 미만

다. 평가결과 활용

○ 경영평가 결과 : A등급

- 평가결과 활용 : 직원 성과급 총액 결정(150~200%) ※ 7월 중 통보

○ 성과평가 결과 : A등급

- 평가결과 활용 : 대표이사 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

· 대표이사 연봉 : 5% 인상 ※ 현재 기본연봉 : 50,000천원

· 대표이사 성과급 : 기본급의 160% 지급

5. 참고사항

- 가.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지표(요약표) [붙임1]
- 나.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(요약표) [붙임2]
- 다. 관계법령 [붙임3]
 - 1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[붙임1]

□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(기관평가) 지표

평가영역	평가부문	평가지표	배점	비고
	리더십	1. 경영층의 리더십	(6)	정성
		2. 전략경영	(6)	(혼합)
I. 지속가능	(12점)	①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 적정성	4	정성
경영		② 외부 지적사항 이행	2	정량
(25점)		1. 조직·인사관리의 적정성	(6)	정성
	경영시스템	(감점) 채용비리 방지	△1.5	정량
	(13점)	(감점) 블라인드채용 도입 여부	△1.0	정량
		2. 재무·예산관리의 적정성	(7)	정성
	주요사업 (12점)	1. 기관 고유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정도	(12)	정성
	수익성 (8점)	1. 사업수익목표 달성도	(8)	정량
경 영 성 과 (45점)	생산성	1. 고용창출 성과목표 달성도	(10)	정량
_,	(15점)	2. 1인당 당기순이익	(5)	정량
	고객만족성과 (10점)	1.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	(10)	정량
	일자리 확대 (10점)	1. 일자리 창출 및 일.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	(10)	(혼합)
		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②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	10	정성
		(감점) ③ 근로기준법 준수	△1	정량
		(가점) ④ 사전심사제 도입 및 운영 실적	+1	정량
ш.	사회적 책임 (20점)	1., 소통 및 참여	(5)	(혼합)
ш. 사회적 가치 (30점)		①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 ② 상생과 협력의 공공노사관계 ③ 단체협약, 단체교섭 등	4	정성
		④ 개별공시 및 통합공시 준수	1	정량
		2. 윤리경영	(2)	정성
		3. 인권경영	(2)	정성
		4. 재난·안전관리	(4)	정성
		5. 안전사고 건수	(1)	정량
		6. 지역상생발전	(6)	정성
총계			100	

[붙임2]

□ 금천일자리주식회사「대표이사」성과평가 지표

단위목표	세부 평가지표	배점	비고
1. 책임경영 구현(10점)	①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이사의 리더십	5	정성
	② 윤리경영 확립 및 투명성 제고	5	정성
	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	4	정량
2. 고객만족 증진(10점)	②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이사의 노력	3	정성
	③ 민원발생 최소화	3	정량
3. 경영수지 개선(10점)	① 영업매출 목표 달성도	5	정량
	② 예산절감 목표 달성도	5	정량
4. 사업관리(10점)	① 주요 사업 관리의 적절성	5	정성
	② 신규사업 발굴 노력	5	정성
5. 경영평가 결과(60점)	① 기관 경영평가 결과(점수환산)	60	정량
총계			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출자.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28조

-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
 - 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
 - 2. 조직·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 - 3. 전년도 결산서
 - 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 - 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 - 6.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6조

- 제10조(평가의 종류) 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 - 1.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 - 2.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 - 3.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
- 제16조(평가의 활용) ①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·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